의 안 번 호

2279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 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5. 30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5. 30.(목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6. 11.(화)

2. 제안이유

○ 영유아 보육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·복지 정보를 담고 있는 울산 광역시 중구 행정·복지달력의 배부대상을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추세 속 정보수혜대상자인 영유아 세대까지 확대 배부하여 정보·시책 전달의 효율성과 구정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4조(배부대상): 제4호 라목 신설

-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 가정

나. 제7조(시행규칙): 삭제

-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4. 근거법규

○「지방자치법」제13조, 제2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행정·복지 정보를 담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·복지 달력의 배부대상을 영유아 세대 까지 확대 배부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지방자치법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2. 주민의 복지증진
 - 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